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10082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용환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에이치 담당변호사 박찬우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2. 1. 12.

주 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5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2018. 12. 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2018. 9. 30. 기준 원금 2,356,671원, 이자지연손해금 9,491,667원, 법적절차비용 376,227원)을 2019. 2. 22.경 순차 양도받고, E 주식회사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대여금채권(2018. 3. 31. 기준 원금 2,050만 원, 이자지연손해금 2,835,399원, 법적절차비용 14,958원)을 2018. 4. 16.경 양도받고, 이를 각 통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던 망 F은 2018. 12. 2.경 사망하였는데, 자녀로 G, H, I, C, 피고를 두었다.

다. G, H, I, C, 피고는 2018. 12. 2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전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9. 2. 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은 이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C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망 F이 대출받은 99,866,000원을 지급받음으로서 자신의 상속분을 미리 지급받았고(특별수익), 한편 망 F은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주택의 재건축공사를 도급주었고, 이에 관한 분쟁이 계속중인데, 피고가 이를 전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기여분) 상속인들의 동의를 얻어 단독상속을 하게 되었는데,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상속분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법리

- 1)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2) 다만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으므로(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된다.
- 3) 결국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 4) 한편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상속재산 협의분할 당시 망 F의 상속재산을 정리하여 보면, 적극재산은 305,866,000원(C이 송금받은 99,866,000원 +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 206,000,000원), 소극재산은 203,309,6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상속재산은 96,556,400원이 되고, 상속인 1인에게 돌아가는 몫은 19,311,280원이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C이 증여받은 99,866,000원은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 이러한 구체적인 상속분을 고려한다면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 F의 채무가 상속인들에게 균분 상속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피고가 전부 부담하게 된 사정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3. 결 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한철

[별지]

부동산 목록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 305㎡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도로명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량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단독주택 지1층 126㎡, 1층 104.58㎡ 이상
끝.

